

## 의무적인 보험에 대한 뉴스

사회보험에 대한 제58/2020/ND-CP호 시행령 및 실업보험에 대한 제61/2020/ND-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 업데이트

2020년07월14일



## 개요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한 사회보험 기여율을 규정하는 2020년05월27일자 제58/2020/ND-CP호 시행령 (“제58호 시행령”) 및 실업보험 (“UI”)에 대한 취업법률의 일부사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2015년03월12일자의 제28/2015/ND-CP호 시행령 (“제28호 시행령”)을 개정하는 2020년05월29일자의 제61/2020/ND-CP호 시행령 (“제61호 시행령”)은 2020년07월1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의무적인 보험규정에 대해 주목할 만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제58호 시행령

- 본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할 기업의 경우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한 기여율 사회보험 근거한 기본급여의 0.5%에서 0.3%로 감소한다.

### 제61호 시행령

- 실업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을 추가;
- 실업보험 납입했지만 실업수당을 아직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규정을 추가;
- 실업수당 신청서류를 추가;
- 근로자는 실업수당에 대한 결정을 받을 마감기한을 수정;
-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직업 훈련, 교육, 기술향상등에 대한 조건을 낮춤

제58호 시행령 및 제61호 시행령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지원 필요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자세한 수정보완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참조하십시오.

사회보험에 대한 제58/2020/ND-CP호 시행령 및 실업보험에 대한 제61/2020/ND-CP호 시행령의 주목할 만한 내용 업데이트

2020년07월14일



# 사회 보험에 대한 제58호 시행령

## 1. 납입기준

고용자의 사회 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정	제58호 시행령 규정
질병 및 출산 기금	3%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	0,5%	0,3% (*)
퇴직연금 및 유족기금	14%	14%
합계	17,5%	17,3%

(\*) 0.3% 납입율을 적용하기로 한 업체는 적용조건 (2부 참조)을 자체 평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노동보훈사회부는 업체의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이내에 검토하여 답변한다.

업체는 승인 유효월로 부터 36개월동안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한 특별우대 납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 만료일 60일전 이내에 연장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 2. 적용 조건

1.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업체; (\*)
2. 신청시점까지 최근03 년 동안 산업 안전, 위생 및 사회 보험에 대한 법령을 위반으로 행정적인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상 기소를 당하지 않은 업체;
3. 신청연도전 최근 연속적인 03 년동안 산재,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의무를 잘 준수한 업체;
4. 업체는 신청연도의 이전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최근 03년 평균의 15% 이상 감소했거나 신청연도전 최근 03년 동안 산업재해가 없었던 연도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유지해야 한다.

(\*) (노동보훈사회부의 2016년05월16일자 제07/2016/TT-BLDTBXH호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 / 산업 업종은 아래와 같다:

- |                              |                    |
|------------------------------|--------------------|
| 1. 광업, 석탄 생산, 정유 제품 생산;      | 6. 선박 건조 및 수리업     |
| 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화학 물질 생산 | 7. 전기 생산, 유통 및 전송; |
| 3. 금속 및 금속 제품 생산;            | 8. 수산물 가공;         |
| 4.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 9. 직조/의류/가죽/신발 제조; |
| 5. 건설;                       | 10. 스크랩 재활용;       |
|                              | 11. 환경 위생.         |



## 실업 보험에 대한 제61호 시행령

### 실업보험을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 대상 추가

- 노동 계약이 종료된 월에 실업 보험을 납입했으며 사회 보험기록서상 확인된 근로자 대상
- 근로 계약이 종료된 월 또는 그전월에 (i) 근무일 기준 14일 이상의 무급 휴직 ; (ii) 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무급 출산 휴가, 병가 ; (iii) 근무일 기준 14일 이상 근로 계약 수행이 일시적 중단되고 사회보험당국에 의해 확인 받을 근로자 대상

### 실업보험 납입했지만 실업수당을 아직 받지 못한 시간에 대한 규정을 추가;

- 근로자가 실업 수당을 받도록 승인되며 실업수당을 받은 후에 사회보험당국에 의해 보험 납입에 대해 추가적인 시간을 확인 된 경우 이시간이 실업보험을 납입했지만 실업수당을 아직 받지 못한 시간으로 간주된다.

### 실업수당 신청서류를 추가;

- 만료된 근로계약, 근로계약 종료결정서외에 근로계약의 형식, 종료사유 및 시점등에 대해 고용주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업체의 관리자인 경우 업체파산 또는 해체에 대해 유관기관에 의한 확인서가 제출할 수 있다;
- 회사에 법적 대표자가 없으므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현지노동부보훈사회국 혹은 사회보험국은 10일 이내에 기획투자부서에 확인요청서를 보낸다.

### 근로자가 실업수당 지급결정서를 받은 마감기한을 수정

근로자가 신청서류 접수 확인서상 결과 나올 예정 일자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실업수당 지급결정서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업 수당을 받지 않을 것으로 간주된다.

###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한 직업 훈련, 교육, 기술향상등에 대한 조건을 낮춤

- 고용자는 30% 또는 30명 이상의 인력을 감소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기존 30% 또는 50명이상임)
- 근로자수에 따른 각 고용주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근로자수가 200 명 미만으로 채용한 고용주: 30 % 또는 30 명이상 감소 ;
  - 근로자수가 200-1000 명으로 채용한 고용주: 30 % 또는 50 명이상 감소
  - 근로자수가 1000 명 이상으로 채용한 고용주: 30 % 또는 100 명이상 감소

##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Suresh G Kumar**  
Tax Partner  
+84 28 7101 4400  
ksures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Vietnam Company Limited and its subsidiaries and affiliate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